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9. 14.(수) 14:00 < 9.15.(목) 조간 >	배포 일시	2022. 9. 14.(수)
담당 부서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책임자	과 장 최성준 (044-203-4850)
		담당자	사무관 김화현 (044-203-4852)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 자동차분야 등 3건 수출·M&A 승인, 전기전자분야 1건 수출 불승인
- 수출승인 심의대상 확대, 심의절차 간소화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해 '기술안보포럼'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9월 14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여 자동차분야 수출승인 등 의결안건 6건을 심의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요 】

◇ (위원회 개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지정, 해외 M&A 승인 등 산업기술 보호 업무 전반의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
◇ (일시 / 장소) '22.9.14(수), 14:00~16:00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8층, KEIT 대회의실
◇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원장), 산업기술보호위원 등
◇ (안건) 의결안건 6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7건
 ㅇ (의결안건) ❶자동차분야 수출승인(안), ❷철강분야 조건부 수출승인(안), ❸조선분야 해외M&A 조건부 승인(안), ❹전기전자분야 수출 불승인(안), ❺❻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ㅇ (보고안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및 추진계획(안)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보유기관의 해외 M&A 의결]

□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접수된 4건의 기술수출 및 M&A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자동차분야(1건)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철강(1건)분야 수출 및 조선분야 해외 M&A(1건)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였다.

※ 수출승인: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①국가안보 ②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수출승인

※ 수출신고: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 수 신고 수리여부 결정

○ 자동차(핵심기술수출), 철강(핵심기술수출), 조선(해외M&A) 분야 신청건은, 기술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기술보호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 자동차 : 자율주행차용 제품(카메라, 레이더 등)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 제공
※ 철강 : 철강분야 탄소중립 관련 최신 조업기술의 국제포럼 발표자료 반출
※ 조선 : 액화가스 압력용기 관련 국가핵심기술보유 기관에 대한 해외 M&A

○ 전기전자 분야(핵심기술수출)의 경우,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기술로서 △해외유출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 우려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 △기술보호·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부족 등의 사유로 수출 불승인 의결하였다.

※ 전기전자 : 2차전지 관련 소재·공정·생산기술 수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및 추진계획(안)]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등 기술보호의 근거가 되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도 논의되었다.

○ 산업부는 △기술수출 개념 확대, 외국인 범위 확대, 외투M&A 심의대상 확대 등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 보유기관의 부담 경감 및 관리 강화 △제재수단 정비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충 등 3대 목표에 입각하여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국정과제)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 통상전략」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수출통제·기술유출 방지·외투 안보심사 등 3대 기술안보 정책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 중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안) >

<table>
<tr><th>개정 목표</th><th colspan="2">세부 분야(안)</th><th>개정 추진방향(안)</th></tr>
<tr><td rowspan="3">기술보호
사각지대해소</td><td colspan="2">❶ 기술수출 개념</td><td rowspan="3">▸대상 구체화
▸대상 확대
(필요시)</td></tr>
<tr><td colspan="2">❷ 외국인의 범위</td></tr>
<tr><td>❸ 외국인투자 (M&A)</td><td>심의대상
지배권</td></tr>
<tr><td rowspan="2">업계 부담완화
및 관리 강화</td><td colspan="2">❹ 심의절차 간소화</td><td rowspan="2">▸제도 개정
▸제도 신설</td></tr>
<tr><td>❺ 관리 강화</td><td>판정 권고제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td></tr>
<tr><td>제재수단 정비</td><td colspan="2">❻ 각종 벌칙
❼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td><td>▸벌칙 및 처벌 강화
(필요시)</td></tr>
</table>

[(가칭) 기술안보포럼 출범]

□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이를 위해 민간 주도로 (가칭) '기술안보포럼' 을 발족하여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이달 중 출범하여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인 이 포럼은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간 및 정부관계기관 위원들로 구성될 계획이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마련은 물론 △산업기술보호 관련 각종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전문가 자문, 주제별 연구회 운영, 산업기술보호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간담회,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금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의의]

□ 이번 위원회는'19년 6월 이후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회의로서, △최근 급변하는 무역안보 상황에 따른 경각심을 고취하고 △기술보호의 중추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되새기는 한편 △국정과제인 기술보호제도 개선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 위원장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무역질서는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으로 대표되는 대 변혁기" 를 지나고 있으며, "혁신의 결과물을 탈취하려는 시도와 이를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양상" 이라고 평가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우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안전핀이자 최후의 보루" 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잘 정비된 산업기술보호제도는 우리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필수 공공재" 라고 강조하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나친 부담은 덜어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오늘날 기술빼가기 수법은 법·제도가 따라잡기에 버거울 정도" 라고 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기술보호는 나와 내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국익을 지탱하는 버팀목"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이고 시의성 있게 협력해 줄 것을 당부 " 하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요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운영 개요)**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현 73개) **수출승인, 산업기술 보호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요 >

▹ **(근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구성)** 산업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14명, 외부전문가 10명 등 **총 25명**

* (관계부처)기재·교육·과기·외교·법무·국방·농림·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차관, 특허청장, 국정원차장

▹ **(기능)** ①종합계획 수립 · 시행, ②국가핵심기술 지정 · 변경 및 해제, ③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④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인수 · 합병 승인, ⑤산업기술보호위 및 전문위 운영 등의 심의 · 의결

○ **(심의 방식)**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사전검토 → 본 위원회 상정 및 의결**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 철도 △철강 △로봇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등 14개 분야 (분야별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재적위원 과반(13명)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7명)으로 의결

□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9.14(수) 14:00~15:30 / 서울(대한상의 8층, KEIT 대회의실)

○ **(참석자) 산업부장관**(위원장, 주재), 산업기술보호위원, 안건 관계자 등

○ **(안건)** 의결안건 6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7건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14:00~14:05	▶ **개회선언 및 인삿말 (대외공개)**	위원장
14:05~15:25 (80′)	▶ **심의 안건**(총 6건) **상정 및 심의 · 의결** ▶ **보고 안건**(1건) **상정 및 자유토론**	
15:25~15:30	▶ **마무리 발언**	위원장

붙임 2 국가핵심기술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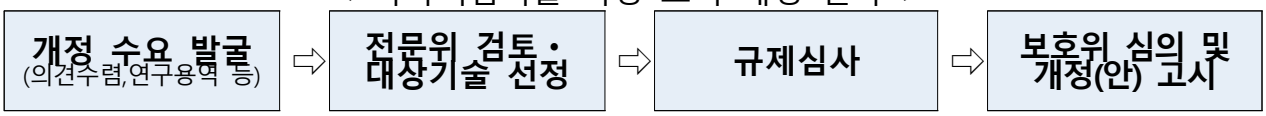
1 국가핵심기술 개요 및 지정 현황

□ (**정의**) 국내외 시장에서의 **가치가 높고** 해외 유출시 **안보·경제적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술

□ (**기준**) 기술환경 변화, 국내외 기술 수준 등을 고려, 보호가치가 높은 **필요 최소한의 기술**을 산·학·연 **수요를 기반**으로 지정

□ (**절차**) 의견수렴 결과 등을 기반으로 보호위원회에서 확정, 산업부 고시

<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 절차 >



□ (**현황**) 지정고시 제정('07.8월, 7개분야 40개 기술) 이후, '21.7월 기준 **총 12개 분야 73개 기술** 지정·관리중

< 분야별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 >

분야	기술 내용
반도체 (11개)	▹ **반도체** 설계·공정·소자 기술 *30나노 이하급 D램·낸드플래시·파운드리, △모바일 AP, 이미지센서, △OLED용 Display Driver IC ▹ 대구경 **웨이퍼** 성장기술, 시스템반도체 **패키지** 관련 기술 및 **무선통신 모뎀** 설계기술
디스플레이 (2개)	▹ 8세대급이상 **TFT-LCD 및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
전기전자 (4개)	▹ **리튬이차전지** 및 **소재** 관련 설계·공정·제조·평가기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 관련 기술
자동차·철도 (9개)	▹ **자동차 및 자율주행동차**의 시스템·부품 설계·제조 기술 *GDI·LPDi 연료분사시스템, Euro6 이상 디젤차 관련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전기차 연료전지 시스템 및 양산 2년 이내 자동차 등 ▹ **철도차량 차체** 및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관련
철강 (9개)	▹ **철근/ 형강 등 제조** 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망간 함유 TWIP강,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선박, 발전소 용 대형 주·단강제품, △저니켈 고질소 스테인리스강 ▹ **FINEX 유동로** 조업, **스마트 수냉각** 및 AI기반 조정밀 **도금·고로조업 제어** 기술
로봇 (3개)	▹ **복강경·수술로봇** 설계·제조 기술 ▹ **공정 작업로봇** 운영·제어 및 **영상감시 기반 로봇** 통제 기술

분야	기술 내용
조선 (8개)	▹ **선박, 가스연료 추진선박, 해양구조물 및 관련 부품** 설계·제조 기술 *고부가가치 선박, 해양시스템, △액화가스 화물창 및 연료탱크 △엔진·크랭크샤프트·프로펠러,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 **자율운항·항해 자동화·선박용 통합제어** 및 **ERP** 시스템, **CAD기반 설계·생산** 프로그램
원자력 (5개)	▹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술 *피동보조급수계통,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기술, △중성자 거울·유도관 개발기술 ▹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 및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정보통신 (7개)	▹ **무선통신** 관련 설계 기술 등 *LTE/LTE_adv 시스템, △기지국 소형화·저전력 PA, △LTE/LTE_adv/5G 계측기기, △5G 시스템 △기가급 이동무선백홀 기술, △광통신 핵심 기술 및 퀀텀 리피터 기술
우주 (4개)	▹ **발사체** 및 **위성** 관련 기술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개폐밸브, △광학위성 정밀 자세제어계 설계, △전자광학 카메라
생명공학 (4개)	▹ **항체 발효정제,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 **원자현미경** 제조 및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계 (7개)	▹ **중요 기계** 설계·제조 기술 *다축 복합가공 터닝센터 △고정밀 머시닝센터 △중대형 굴삭기,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트랙터용 변속기, △고효율 터보 압축기, △인간친화형 승강기

2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보유기관의 M&A 관리

□ (**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수출**(매각, 이전) 또는 **M&A**하려는 경우 **산업부장관의 허가**(국가R&D 지원받은 경우 : **승인**, 이외 : **신고**) 필요

□ (**절차**) 심의사항에 대해, **분야별 전문위원회**(필요시 소위원회 개최) **검토**를 거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

* (승인) 접수→전문위원회(필요시 소위원회) 심의·의결→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신고) 접수→전문위원회(필요시 소위원회) 심의·의결 (산업부의 신고수리 결정 후 효력발생)

□ (**심의기준**) **국가안보**(국방·치안, 국가경제·산업, 기술분야, 기술보호대책 등) 및 **국민경제**(GDP·수출·고용 및 지역경제 영향, 국내투자 가능성 등) **파급효과 검토**

<국가안보 영향 검토 시 세부 심의기준>

검토 분야	세부 심의기준
국방·치안	① **타 법령** 등에 의해 기술 등의 수출, M&A 등이 제한되는지 여부(전략물자, 방산물자 등) ② 수출·M&A **대상 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③ **안보위협 국가**로의 수출·M&A 여부
해당 기술분야	④ **해당기술 확보의 난이도** 및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⑤ 해당 산업의 **대외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⑥ **경쟁국의 기술수준**에 미치는 영향 ⑦ 수출대상국 등의 **법령**·당사자간 **계약** 등에 의해 **향후 기술유출 가능성**
전체 산업	⑧ **연관산업** 파급 효과 ⑨ **중요 인프라 등** 사회기반에 미치는 영향
국가경제 기반	⑩ 정부수입 감소, 투자, 기술손실 등에 대한 영향 ⑪ 중요한 자원조달의 장기 전망에 미치는 영향 등
기타 중요사항	⑫ **기술보호 대책**의 적절성 ⑬ 기타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국민경제 영향 검토 시 세부 심의기준>

검토 분야	세부 심의기준(안)
국내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① **GDP·수출·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②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기술수출 대신 **국내에 대체 투자**할 가능성 등
기타 중요한 사항	④ 기술보호 대책의 적절성 ⑤ 기타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벌칙**)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시 **산기법에 따라 처벌**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 **병과**
(산업기술 **해외유출**, **미승인** 수출/해외M&A)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핵심기술 **국내유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붙임 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 첨단기술 보호 환경 】

안건 심의에 앞서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오늘 회의의 배경과 목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무역질서는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으로 대표되는
대 변혁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첨단기술을 오늘의 경쟁력과 미래를 책임질 전략 자산으로 보고,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또 개발된 기술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결코 국제규범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단숨에 좁히려는 욕심은
후발기업들을 이른바 "기술빼가기"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가핵심기술을 겨냥한 해외의 탈취 시도가
2017년 3건에서 2021년 1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적발된 숫자가 이 정도이면
물밑에서 벌어지는 일은 훨씬 심각할 것입니다.

금년에 경찰이 실시한 산업기술유출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지난해 대비 167%나 검거인원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이룩한 혁신의 결과물을 탈취하려는 시도와
이를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마치 창과 방패처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양상입니다.
우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역할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국가 핵심기술의 선정, 선정된 핵심기술의 수출여부 심사,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아줄 안전핀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첨단기술 역시,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과 인수합병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책무를 맡아 주신 위원님들과,
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기술 보호 정책 방향 】

잘 정비된 산업기술보호제도는
우리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필수 공공재입니다.

2006년 산업기술보호법이 생긴 이래,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산업기술보호체제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덜어내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업기술 보호 제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국경을 넘지 않고도 일어나는 외국인에 대한 기술이전,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를 통한 인수합병과 같이
우리 현행법에서 다루기 곤란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기술 보호 제도는
이러한 기존의 사각지대를 짚어내 보완하는 동시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 절차들은
과감하게 간소화시킨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달 중 '기술안보포럼' 을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포럼을 통해,
우리 제도의 허점, 추가로 정책 개입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민간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연말까지 운영을 목표로 출범하는 기술안보포럼은
산업기술보호법을 현대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제도의 이행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현행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과 함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협업하는 일은
이미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앞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국가핵심기술을 시의성 있게 선정하고,
보유 및 관리현황 실태조사를 내실화하는 한편,
기업들의 기술보호 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기술 빼가기 수법은
법과 제도가 따라잡기에 버거울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기술보호 제도는 나와 내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국가 이익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함께 지켜낸다' 는 생각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도 불요불급한 규제 요소들은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의 노력에 적극 화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회가
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보다 촘촘하고 물샐틈없는 제도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